

사이버 명예훼손과 관련된 각국의 대응방안

박정환[○]
[○]조선이공대학
e-mail: najhpark@paran.com

Each Country's Countermeasures Related to Defamation in Cyberspace

Jeong-Hwan Park[○]
[○]Chosun University College of Science & Technology

● 요 약 ●

사이버 명예훼손이란 사이버공간에서 행해지는 명예훼손으로, 기존 명예에 관한 죄가 인터넷 등 사이버공간에서 행해지는 것을 말한다. 즉 오늘날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월드와이드웹을 통하여 동시성, 의사소통의 쌍방향성, 접근의 용이성, 익명성의 특징을 갖는 사이버공간에서 나타나는, 사이버공간의 대표적 반작용 중의 하나이다. 이 연구에서는 사이버 명예훼손과 관련된 개념 및 유형과 특성을 살펴보고 선진 각국의 입법례를 살펴본 후, 우리나라의 대응 방안과 관련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키워드: 사이버공간(Cyber Space), 명예훼손(Defamation), 사이버 명예훼손(Defamation in Cyberspace)

I. 서론

사이버공간이란 용어는 William Gibson이 1980년대 발표했던 공상과학소설 'Neuromancer'에서 처음 쓴 용어이다. 이처럼 원래 SF소설의 개념이던 사이버공간이라는 용어를 인터넷 등에서 커뮤니케이션의 세계를 나타내는 개념으로 사용하기 시작한 사람은 John Perry Barlow로, 그가 '전기통신과 커뮤니케이션의 세계'를 사이버공간이라고 명명한 사실이 Time지에 소개되면서 이 개념이 법학자와 실무자 간에도 통용되게 되었고, 후에 I. Trotter Hardy 교수도 그의 논문 "The proper Legal Regime for Cyberspace"에서 사이버스페이스를 '컴퓨터 네트워크상의 저차적 커뮤니케이션의 세계'라고 정의하였다.[1] 사이버공간은 인터넷에 의해 구현되게 되는데, 동시성, 의사소통의 쌍방향성, 접근의 용이성, 익명성 등으로 인해 오늘날 기존의 사회와는 다른 사회영역을 창출하며 타인과의 활발한 커뮤니케이션을 가능하게 하며, 우리의 삶을 보다 윤택하게 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에게 제공해주는 많은 순영향과 함께 수많은 악영향도 주고 있는데, 그 중 대표적인 것이 사이버 명예훼손이다. 이는 오프라인에서의 명예훼손과 비교하여 피해자의 인권 침해가 순간적이고 광범위하며 심지어 제3자에 의하여 명예훼손이 조작될 가능성도 있고, 사이버공간은 비가시적이므로 범죄자들이 자신의 얼굴과 정체를 노출시키지 않은 채 얼마든지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2]

이 논문에서는 사이버공간과 결부되어 나타나는 사이버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그 개념 및 유형과 특성을 살펴보고 선진 각국의

입법례를 살펴본 후, 우리나라의 대응 방안과 관련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사이버 명예훼손

1. 개념

사이버 명예훼손이란 '사이버공간에서 행해지는 명예훼손'으로 정의할 수 있는데, 기존 명예에 관한 죄가 인터넷 등 사이버공간에서 행해지는 것을 말한다. 사이버공간의 명예훼손은 컴퓨터에 접속하는 즉시 순식간에 수백만의 사람에게 알려질 수 있기 때문에 현실세계의 명예훼손보다 피해의 심각성이 더욱 크다.

2. 유형

2.1 BBS

전자게시판(Bulletin Board System : BBS)이란 텍스트 모드로 제공되는 서비스로서, 인터넷상 서비스들의 대부분을 메뉴방식으로 통합한 서비스를 말한다. 즉 호스트 컴퓨터에 설정되어 있는 가상의 게시판이나 토론실은 이용자가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로 특정한 알림 사항이나 주제에 대한 정보나 의견을 공유할 수 있는 전자적 광장이다. 인터넷이나 PC통신을 선거홍보매체로 활용하면서 통신이용자들은 특정후보에 대해 비판하거나 지지하는 발언을 자주 게재하게 되는 경우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기도 한다.[3] 특히 최근에는 기존의 음란물 등에 유명 연예인의 얼굴을 합성하여 성적인 내용 등으로 임의로 왜곡하거나, 음란동영상을

BBS에 올리는 방법의 피해가 자주 발생된다.

2.2 Messaging

메시징의 한 형태인 전자우편은 인터넷 이용자끼리 편지를 주고 받는 것으로, 개인적 전자서신 뿐만 아니라 수신자 명단을 작성하여 다수의 이용자들에게 동시에 발송하는 메일유형이 있는데 후자의 경우는 사이버 명예훼손의 성립가능성이 높다.[4] 또한 최근에는 소위 스팸 메일에 의해서도 사이버 명예훼손시비가 야기되고 있다.

다음으로 네이트온, MSN메신저로 대표되는 인스턴트메시징 서비스에 의한 명예훼손도 현실적으로 크게 문제되고 있다. 이는 말을 주고받듯이 키보드로 메시지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네트워크 상에서 이루어지는 실시간(real-time) 커뮤니케이션을 뜻하는데, 1대 1 채팅이라 하더라도 불특정 다수인에게 계속적, 반복적으로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행위를 하는 경우, 채팅서비스가 제공되는 당해 웹사이트가 어느 정도로 폐쇄적 혹은 개방적인 성격인지, 채팅방의 성격과 멤버의 구성이 어떠한 등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상황일 때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가 실무상 주요 쟁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5]

2.3 Anti-Site

안타사이트란 특정사이트 혹은 특정인물, 회사 등을 대상으로 부정의 의사를 가지고 사이트를 개설하여 목적 대상의 부정적인 면을 집중적으로 부각시키는 사이트를 통칭하는 단어로, 부정이나 불합리에 대한 감시자로서 여론을 형성하고 잘못을 바로잡는 긍정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반면에, 무책임한 유언비어나 일방적인 비난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억울한 피해자를 양산 할 수 있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 안타사이트 개설 목적 자체가 명예훼손을 위한 것인 경우도 많으므로 개설 목적 및 비난의 정도가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범위 내인 것인지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하여 그 규제방향을 잡는 것이 필요하다.

3. 특징

사이버 명예훼손의 특징은 사이버공간이 갖는 특성인 익명성, 쌍방향성, 광범위성에 기인한 특정 이외에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3.1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ISP)의 존재

사이버공간에서의 커뮤니케이션 활동은 특성상 필수적으로 매개역할을 하는 ISP의 존재를 전제로 한다. 대체적으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단순 매개자 혹은 저장자, 콘텐츠제공자, Hosting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세 가지 유형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ISP라 함은 마지막 세 번째 유형을 지칭한다.[6]

ISP는 이렇듯 구조상의 필수적인 매개요소라는 이유 외에도, 사이버스페이스의 익명성으로 인해 직접 가해자를 찾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일이 직접가해자를 찾아서 책임을 묻는 것보다는 ISP에게 일정 책임을 묻는 것이 피해자 보호에 더욱 실익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표현의 자유와 연관 지어 생각해 보면 국가공권력의 개입보다는 사이버공간 내에서의 자율적인 통제와 질서의 확립이 바람직하다는 점도 ISP에게 사이버 명예훼손에 대한 책임을 묻는 하나의 논거가 될 수 있다.[7]

3.2 기술 통제의 어려움

사이버공간을 통한 정보의 이동은 하나의 방법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는다. 물론 다수에 의해서 이용되는 프로그램과 정보전송 방법이라는 것이 존재하지만 사이버공간에서 수많은 프로그램이 존재하고 있으며 현재에도 새로운 방법들이 개발되고 있어, 가상공간에 기술적인 방법으로 정보의 이동을 통제한다는 것은 매우 곤란한 일이다.

3.3 범죄의식 부재

전통적 범죄와 다르게 컴퓨터를 이용한 범죄는 범죄의식이 희박한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다. 왜냐하면 행위자(가해자)와 피해자가 멀리 떨어져 있으며 행위자와 피해자 사이에 인간이 아닌 컴퓨터라는 기계가 개입되고 있기 때문이다.[8] 이는 사이버공간은 익명성 등 다양한 특징이 있기 때문에 인간들은 사회적 규범이나 구속으로부터 해방감을 느끼고 이를 바탕으로 범죄 또는 비행 하등의 범죄 의식 내지 탈법적의식 없이 범행을 범하게 되고 이는 사이버 공간에서의 보편적인 행위로 사회 통념화되고 있다.

III. 선진각국의 대응방안

1. 미국

미국은 기존의 통신법(Telecommunication Act)을 1996년 개정하여 기존의 방송, 전화, 케이블TV, 정보통신 분야에 ISP의 책임을 부여 하는 내용을 포함하였다(Communication Decency Act). 이 법은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 전자게시판 운영자나 홈페이지 운영자 등으로 하여금 18세 미만 미성년자에게 음란물을 제공하거나, 사람들에게 불건전한 자료 또는 명예훼손과 같은 내용의 게재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우도록 규정하고 있다.[9] 요컨대, 익명이나 가명을 많이 사용하는 특징 때문에 이 법은 글이나 내용을 게재해 준 인터넷 서비스업체 또는 운영자에게 책임을 부과하여 이들을 처벌함으로써, 이들로 하여금 스스로 사용자들의 내용물을 모니터링(Monitoring) 할 수 있도록 유도하지는 데 특징이 있다. 따라서 인터넷에 의해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판단하는 개인이나 단체는 ISP, BBP, Sysop 등을 상대로 소송을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우선은 기존의 명예훼손범리에 준하여 명예훼손법을 위반했느냐 하는 것이고 다음은 ISP, BBP, Sysop 등에서 이 데 대한 책임이 있느냐 하는 것이다. 책임의 유무는 명예를 훼손시킨 인터넷 사용자(Defamer)의 글을 단지 전달만 해준 배포자(Distributor)로 간주되느냐 발행자(Publisher)로 간주되느냐 하는 것이다. 배포자로 간주되면 책임에서 모면할 수 있으며, 발행자로 간주되면 책임을 져야 한다.[10] 이들에 대한 2차적 책임유무는 전통적인 발행자-배포자 모델로 파악된다.[11] 또한 동법은 전통적인 발행자-배포자 모델을 사이버공간에 적용함에 있어서의 특칙으로 통신품위법은 제230조에 '선한 사마리아인(Good Samaritan Clause)' 조항을 두어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타인에게 명예훼손이 담긴 내용이 게재되면 일정한 요건 하에 인터넷서비스업자나 전자게시판운영자, 홈페이지운영자 등의 관리자에게도 책임을 상당 부분 면제 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두었는데, 이는 명예훼손과

표현의 자유의 조화를 표현의 자유를 중심으로 모색하고자 하는 시도로 보여 지는 것으로 판단된다.[12]

2. 영국

영국은 미국의 통신법 개정 시와 같은 해인 1996년 명예훼손법(The Defamation Act OF 1996)을 개정하여, 인터넷에 관한 규정 제1조에 발행자의 책임(Responsibility for Publication)을 추가하였다. 즉 인터넷에 의한 명예훼손도 기존의 방송, 출판에 의한 명예훼손과 똑같이 취급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미국과 마찬가지로 인터넷 사용자에게 책임을 묻기보다는 ISP, BBP, Sysop에게 책임을 묻고 있고, 면책규정도 함께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영국의 인터넷 명예훼손법이 미국과 다른 점은, 미국은 명예를 훼손시킨 사람(Defamer), 즉 피고의 입장에서 원고로 하여금 피고가 원고에게 명예를 훼손시켰다는 증거를 제시해야 하지만, 영국은 반대이다. 명예훼손 소송이 진행되면, 피고는 원고에게 명예를 훼손시키지 않았다는 증거를 제시해야만 한다. 그렇지 못하면 피고가 패소를 하게 되는 것이다.[13] 또한 그가 명예 훼손적 진술이 공표를 야기하였거나, 그 공표에 기여한 사실을 몰랐고, 그렇게 믿을 이유도 없었던 경우에는 면책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제1조 제1호 내지 제3호), 누구라도 다음의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내용의 저작자, 편집자, 또는 출판업자로 간주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독일

독일은 1997년 제정 공포된 정보-통신서비스법(Das Informations-und Kommunikations dienste Gesetz : InKdG)을 통해 멀티미디어를 사용한 전자적 정보서비스, 통신서비스와 관련된 법적 책임소재를 명확히 함과 동시에 이러한 서비스제공자의 투명성을 확보 하고 있다.[14] 동법은 정보, 통신서비스와 관련하여 통일적이고 명확하며 신뢰성 있는 정서범주를 제정함으로써 정보화의 방향을 제시하고 데이터보호, 지적소유권, 청소년보호 등에 대한 요청과 자유로운 서비스이용과의 조정을 행함을 목표로 하고 있다.[15] 독일은 이 법에 사이버명예훼손에 관한 특칙을 마련하고 있는데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스스로 이용에 제공한 자신의 콘텐츠에 대한 일반법상의 책임을 진다. 서비스제공자는 이용에 제공된 제3자의 콘텐츠에 대하여 이용을 위하여 단순히 접근을 제공하는 경우에 책임이 귀착되지 아니한다. 서비스제공자가 전기통신법 제85조에서 정하는 통신 비밀을 보전하여, 이 내용물에 대해서 인지를 요구하고, 차단이 기술적으로 가능하다고 판단된다면, 일반법에서 정하는 불법적인 내용물의 이용에 대한 차단의 의무는 저촉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이 규정은 2001년 개정에 의하여 동법 제8조 이하에서 좀 더 세분화된 규정으로 개정되었다.

4. 일본

일본은 아직까지 특별히 사이버명예훼손과 관련한 입법은 부재하고, 사이버명예훼손을 방지하고자 하는 지침서를 두고 실행하고 있었다. 그러나 2002년 4월 1일부터 “특정 전기 통신 업무 제공자의 손해 배상 책임의 제한 및 발신자 정보의 게시에 관한 법률”을 제정, 시행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범위를 규정하고 있

다.[16] 이 법에 따르면 ISP는 정보의 유통으로 인하여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송신을 방지하는 조치가 기술적으로 가능하고, 권리침해를 알거나 알 수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가 아닌 한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하고, 침해정보의 송신을 방지하는 조치를 취한 경우 부당한 권리침해를 믿기에 충분한 상당한 이유가 있거나 피침해 권리자로부터 송신방지 신청이 있고 이에 대해 침해자가 7일내에 부동의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IV. 결론

이상에서 사이버명예훼손에 대한 개념과 선진 각국의 입법례에 대해 살펴보았다. 사이버명예훼손 규제에 대한 각국 입법례의 특징은 바로 ISP의 책임에 집중됨을 알 수 있다. 이는 인터넷을 통해 구현된 사이버공간은 사이버명예훼손계시물을 작성한 직접침해자에 대한 피의자 특징이 어렵고 진정한 피해자를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ISP, 즉 운영자에게 당해 명예훼손에 대한 책임을 물어 이를 해결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상당하다는 점에서 귀결된 것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ISP에게 무조건적으로 책임을 부담지운다는 것은, ISP가 이러한 명예훼손 책임을 면책하려고 사전에 모니터링을 철저히 하여 위협소지가 있는 내용물은 전부 삭제하는 방향으로 운영하여 결국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ISP가 자료에 대한 소극적인 심사를 취하여 인터넷상 정보의 질을 격감시키는 부작용이 발생되게 될 것이다.

우리 법제에서는 사이버명예훼손과 관련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불법정보의 유통금지 규정을 통해,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할 경우, 제70조 벌칙을 통해 사실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거짓의 사실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반의사불벌).

참고문헌

- [1] 박창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민사책임”, 전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9, pp.7-9.
- [2] 강동범, “사이버범죄와 형사법적 대책”, 「형사정책연구」, 제11권 제2호, 2000, p.5.
- [3] 강경원, “인터넷 환경 속 수사실무와 대책”, 수사연구소, 수사연구, 2001, p.29.
- [4] 장일환, “사이버 범죄의 유형과 그 대책에 관한 연구”, 전북

- 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0, p.65.
- [5] 서보학, 「인터넷상의 정보유포와 형사책임」, 형사정책연구 제12권 제3호, 가을호, 형사정책연구원, 2001, p.3.
- [6] 한상희,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법적 책임-명예훼손과 관련하여」, 언론중재, 언론중재위원회, 2001 겨울호, p.36.
- [7] http://www.iscmeiji.ac.jp/~sumwel_h/cyberlaw/lib/lib_002.htm
- [8] 최완진, 「컴퓨터범죄에 관한 소고」, 형사법학의 과제와 전망, 한국사법행정학회, 1993, pp.805-806.
- [9] J. Rosenoer, *CyberLaw · The Law of the Internet*, Springer, 1997, p.109.
- [10] 한상희,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법적 책임-명예훼손과 관련하여」, 언론중재, 언론중재위원회, 2001 겨울호, p.37.
- [11] Lance Rose, *NetLaw : Your Right in the Online World*, Osborne McGraw-Hill, 1995. pp.8-26.
- [12] 황찬현, “사이버스페이스에서의 명예훼손과 인권보장”, 정보화사회의 인권보장, 법무부 · 한국법학원 주최 법학심포지엄 자료집, 2000.12., pp.12-22.
- [13] 이해완, “인터넷상의 명예훼손과 표현의 자유”, 한국헌법학회, 제12회 학술 발표논문, 2000, p.133.
- [14] 김재광, “인터넷상 명예훼손의 공법적 검토-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법적 책임을 중심으로”, 인터넷 · 언론 · 법, 한국법제연구원, 2002, p.140.
- [15] 정완, “인터넷의 이용과 그 법적 규제”, 형사정책연구소식,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7, p.16.
- [16] <http://www.etnews.co.kr/news/detail.html?id=200807290084>.